

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Ⅱ

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II 약관

제 1 조 적용대상

① 이 특별약관 (이하 “특약”) 은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된 보험계약 (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“주계약” 이라 합니다)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.

제 2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

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 (이하, “지정대리청구인” 이라 합니다)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1. 제 2 항에서 정한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대리청구인(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,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 지정)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. (이하, “기명 지정대리청구인” 이라 합니다)
2. 제 1 호에도 불구하고, 무기명으로 제 3 조 제 1 항 제 4 호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(이하, “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” 이라 합니다) 단, 지정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
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예시

- 기명 지정대리청구인
 - 계약자가 기명하여 지정 : (예시) “김OO”
-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
 - 계약자가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지정 : (예시)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

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판단 예시

- 보험 가입 당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(당시 해당 서류상 배우자 A)로 지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

구할 수 없어 대리청구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B인 경우

→ 해당 시점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3 조 제 1 항 제 4 호로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B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6 조 (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)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하거나 제 3 조 (보험금 등의 청구)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1.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
2.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(단,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)

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 조 (적용 대상) 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계약자가 비혼·독신인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뢰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제 1 항에서 정한 지정대리청구인 자격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개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
⑤ 제 1 항 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신청서(회사양식)
2. 계약자의 신분증
3.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

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,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 5 항 제 3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

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
제 3 조 보험금 등의 청구

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1. 청구서 (회사양식)
2. 사고증명서
3.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하며, 이하 ‘신분증’이라 합니다)
4.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(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주민등록등본
5.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
②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**의료법 제 3 조 (의료기관)**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

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

① 이 법에서 “의료기관“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·조산의 업(이하 “의료업“이라 한다)을 하는 곳을 말한다.

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의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- 가. 의원
- 나. 치과의원
- 다. 한의원

2. 조산원: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·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
3. 병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- 가. 병원
- 나. 치과병원

다. 한방병원

라. 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마. 정신병원

바. 종합병원

(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)

제 4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

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3 조 (보험금 등의 청구) 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 (적용대상) 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 조 (적용대상) 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 (사망보험금 제외) 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인의 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 할 수 있으며, 대표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제 2 조 (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지정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 다만, 2인 이상의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 5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

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.

② 제 1 조 (적용대상) 의 계약이 해지, **무효**,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무효

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

제 6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

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1.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 (회사양식)
2.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 (가족관계증명서 등)
3. 계약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)
4.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제 2 조(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)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
제 7 조 준용규정

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